

PRADIUM

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

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(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)로 선정·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 ‘청약Home’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동·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 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,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·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,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, 한국부동산원 ‘청약Home’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인터넷 청약 접수 및 동·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, 당첨일로부터 ‘수도권 및 투기·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외 6개월, 위촉지역 3개월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 주택(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-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 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안내문 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I.사업개요 및 공급세대

■ 위 치	경기도 광명시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A6블록		
■ 공급 규모	공동주택(아파트) 지하 2층, 지상 22층 6개동 총 426세대 중 일반분양 426세대(기관추천 43세대)		
■ 시행/시공	시행 : (주)티글로벌 시공 : (주)티건설, (주)티종합건설, (주)시티	■ 공급 대상	85㎡이하 주택 건설량의 10% 범위
■ 입주예정	2029년 03월(예정)	■ 분양 문의	1899-6851

■ 공급 내역											(단위 : ㎡, 세대)
구분	주택형 (주거전용 면적기준)	약식 표기	세대별 공급면적(㎡)					총공급 세대수	기관추천 배정세대수		비고
			주택공급면적(㎡)			기타공용면적 (주차장 등)	계약면적		확정	예비	
			주거전용	주거공용	소계						
민영 주택	059.9742A	59A	59.9742	18.5296	78.5038	47.5470	126.0508	21	2	10	
	059.7421B	59B	59.7421	18.5593	78.3014	47.3631	125.6645	87	8	40	
	084.8481A	84A	84.8481	24.3323	109.1804	67.2669	176.4473	86	9	45	
	084.9648B	84B	84.9648	24.1873	109.1521	67.3593	176.5114	21	2	10	
	084.9558C	84C	84.9558	24.2280	109.1838	67.3523	176.5361	105	12	60	
	084.9796D	84D	84.9796	24.5768	109.5564	67.3711	176.9275	21	2	10	
	084.9149E	84E	84.9149	25.3601	110.2750	67.3198	177.5948	85	8	40	
	합계							426	43	215	

※ 상기 공급내역은 현재 인·허가 진행 단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(*괄호() 안은 예비 대상자 수)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85㎡ 이하 민영주택 10% 범위 내 공급 (단위 : 세대)

구분	배정 세대수(예비 500%)							합계
	59A	59B	84A	84B	84C	84D	84E	
국가유공자등	-	-	1(5)	-	1(5)	-	-	2(10)
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	-	-	-	-	1(5)	-	1(5)	2(10)
장기복무제대군인	-	1(5)	-	-	1(5)	-	-	2(10)
중소기업근로자	-	1(5)	-	-	1(5)	-	1(5)	3(15)
철거민	1(5)	6(30)	7(35)	1(5)	7(35)	1(5)	6(30)	29(145)
장애인	경기도	1(5)	-	1(5)	-	1(5)	-	3(15)
	서울특별시	-	-	-	1(5)	-	-	1(5)
	인천광역시	-	-	-	-	1(5)	-	1(5)
합계	2(10)	8(40)	9(45)	2(10)	12(60)	2(10)	8(40)	43(215)

※ () 괄호안 숫자는 예비입주자 추천 세대이며, 500% 적용하였습니다.

※ 상기 내용은 인·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※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이 가능하고,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,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.
- ※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, 주거공용면적은 계단, 복도, 공동현관,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,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, 지하층, 전기/기계실, 주차장, 관리사무소,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.
- ※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 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※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(㎡)로 표기하였음 (평형환산방법: 공급면적(㎡) × 0.3025 또는 공급면적(㎡) ÷ 3.3058)
- ※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,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.
- ※ **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 기관의 추천순위에 의하며, 사업주체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.**

Ⅱ. 분양 일정(예정)		
구분	일정(예정)	비고
입주자모집공고문	2026.09.18.(금)	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및 당사 홈페이지(https://광명시티프라디움.com)
건본주택 개관	2026.09.18.(금)	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-2 당사 홈페이지(https://광명시티프라디움.com)
특별공급 접수일자 [인터넷 청약 원칙]	2026.09.28.(월) (09:00~17:30)	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※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
당첨자 발표	2026.10.08(목)	한국부동산원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
정당계약 체결	2026.10.19.(월) ~ 10.21(수)	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건본주택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-2

- ※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·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,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인터넷 청약 : '청약Home'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
- ※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①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, ②금융인증서, ③네이버인증서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 신한인증서 ⑦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[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'청약Home'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에서 운영하는"청약 가상체험"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]
- ※ 단,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(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)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- ※ '18.05.04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 청약(청약Home) 신청(서류 제출 없음)이 원칙이며, 노약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(10:00~14:00) 가능합니다. 단, 건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(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- ※ 건본주택에서 현장 접수 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, 인터넷 청약 가능시간(09:00~17:30)과 현장 접수 가능시간 (건본주택 10:00~14:00)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Ⅲ.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- 기본요건
- ※ 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(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)로 선정·통보된 분
- 추천 대상자 : 해당 기관에서 '확정자 또는 당첨자'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'당첨자'가 되는 분
- 예비 대상자 : 해당 기관에서 '예비 대상자'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'당첨자'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

구분	내용
공급기준	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제1호,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제한 예외) ※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. 다만 2024.03.25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,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

구분

당첨자발표일이
다른 주택

부부가
중복당첨된
경우

당첨자
발표일이
같은 주택

부부 외
세대원이
중복당첨된
경우

처리방법

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, **당첨자발표일이 늦은** 당첨건은 **부적격** 처리

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**접수일시가 늦은** 당첨건은 **무효** 처리
※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,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

모두 **부적격** 처리

무주택
요건

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

■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

■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,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.

무주택
요건

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■ 2018.12.11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의3, 제2조제4호에 의거 ‘세대’ 및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.

- “세대”란,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“세대원”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경우는 제외)

가. 주택공급신청자

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
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 부·모, 장인·장모, 시부·시모, 조부·조모, 외조부·외조모 등

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, 이하 같음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 아들·딸, 사위·며느리, 손자·손녀, 외손자·외손녀 등

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: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전혼자녀 등

-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,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,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

당첨자
선정방법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. (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)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,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

청약
자격조건

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- 기관추천(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(도시재생 부지제공자)는 청약통장 불필요)

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

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한함)

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

■ [청약예금의 예치기준 금액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)] (단위 : 만원)

구분	서울특별시 (특별시 및 부산광역시)	인천광역시 (그 밖의 광역시)	경기도 (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)
전용면적 85㎡ 이하	300	250	200

※ 상기 신청자격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기본 사항만을 안내한 것으로,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V. 유의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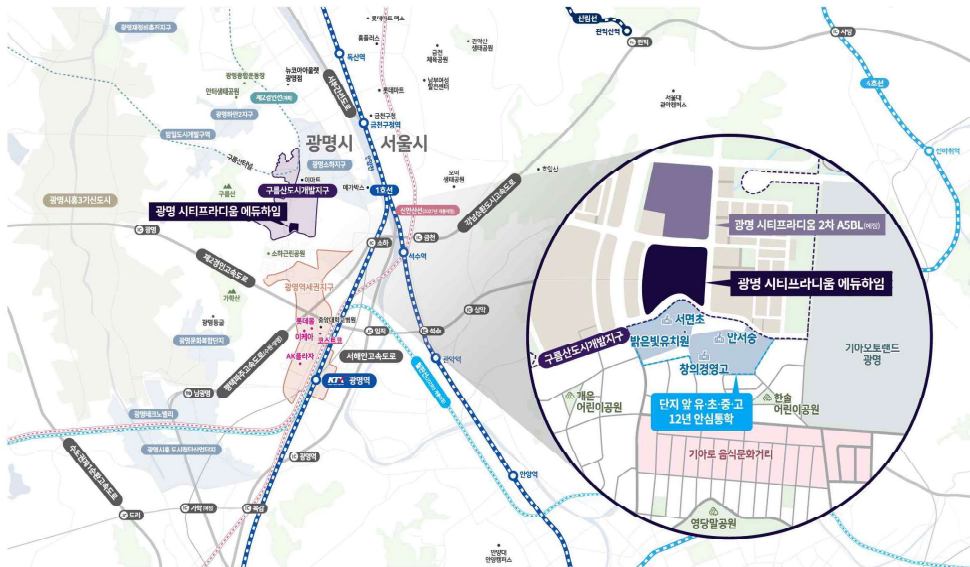
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다만 2024.03.25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, 중복당첨 시 처리 관련한 내용은 본 안내문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(타입 변경 등)가 불가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,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공급금액,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,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, 해당 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·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,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(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)되며,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
-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2018.12.11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7호의2, 제23조제4항,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(이하 “분양권등”)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,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(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참조)
- ※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(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, 제565호, 2018.12.11. 시행)
 -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시행일(2018.12.11.) 이후 ‘입주자모집공고문, 관리처분계획(정비사업) 또는 사업계획(지역주택조합)’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, ‘공급계약 체결일’ 기준 주택 소유로 봄(*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,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)
 - 분양권등 매수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시행일(2018.12.11.)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, ‘(실거래 신고서상) 매매대금 완납일’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
-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
 - 가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)에 해당하지 않는 것: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)에 따른 가격이 1억원(수도권은 1억6천만원) 이하일 것
 - 나.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: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)에 따른 가격이 3억원(수도권은 5억원) 이하일 것
 - 1)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
 - 2)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)에 해당하지 않는 것
 - 3)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
-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,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,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,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(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)
-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(예비대상자의 경우 경쟁 시 탈락할 수 있음)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타 특별공급(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노부모 부양, 생애최초, 신생아)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, 대상자 본인이 동일 청약통장으로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.
-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하여야 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(동·호 배정) 및 계약불가)
- 신청자격, 당첨자 선정방법, 동호수 추첨, 예비입주자 선정, 구비서류, 공급금액,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(청약홈 www.applyhome.co.kr)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,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(10:00~14:00)가 가능합니다.
- 노약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의 견본주택 방문 신청 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,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(신청자, 배우자,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)
- 청약, 전매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입주자모집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, 신청하실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분양사무실,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홈페이지(<https://광명시티프라디움.com>)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대표번호 ☎ 1899-6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당 안내문에 오타 및 오기입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V. 견본주택 및 사업지 위치

■ 사업지 위치 안내

교통, 교육, 미래가치까지 서울옆세권을 완벽하게 누리는 착한 특권!



PREMIUM6

- 1호선-KTX 광명역, 강남순환고속도로, 제2경인고속도로, 월탄선-신안산선(배정) 등 **편리한 쾌속교통**
- 이케아, 롯데몰 등 광명역세권, 철산, 광명뉴타운 인접생활권 **풍부한 생활인프라**
- 단지 바로 앞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위치 **원스톱 교육환경**
- 67만 여㎡ 구름산 도시자연공원, 소하권립공원, 지구내 공원 **쾌적한 힐링라이프**
- 20분대로 다가깝고 빠르게 누리는 서울옆세권도시의 가치 **가까운 서울옆세권**
-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중심, 광명·시흥3기신도시 확대수혜인지 **독보적 미래가치**

※ 상기 지역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※ 상기 지역도에 표기된 각종 개발계획 등 기반 시설은 인 허가나 정부 시책 및 해당 사업주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함바, 해당 인 허가 및 환경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시행사 및 시공사의 무관합니다.

- ※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※ 단지 주변교통시설, 기타 주변개발계획 등은 인 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이는 시행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.

■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 안내



사업지 주소 :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A6BL

견 본 주 택 :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-2

VI. 분양 문의

대표번호	1899-6851
홈페이지	https://광명시티프라디움.com